

1. 개정이유

여객선 운항관리비용의 부담주체, 설치목적 등 기존 행정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2020.2.1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결손처분의 사유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개정 규정에 맞게 여객의 금지행위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별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던 여객선 안전정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통합 게시하여 공개토록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여객선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선 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안 제10조의4제3항 개정)

내항여객운송사업자 개별적으로 안전정보를 게시함으로써 갱신·누락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의 정보접근 편의성이 부재함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통합 게시하여 공개토록 함.

나. 여객의 금지행위 개정(안 제15조의8제2호의2 삭제)

선박운항관리자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 상 여객의 금지행위로서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삭제.

다.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안 제15조의16 개정)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의 여객운임액 부과기준 범위를 규정하고, 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절차 및 결손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함으로써 개정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3항 본문 중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의8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임액의 1천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2조의2제6항에서 “채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이 불명된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④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① · ② (생략)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제1항에 따른 사고이력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 내용은 최근 3년간 정보를 말한다)를 <u>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u> 공개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u>다만,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u> 공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2. (생략)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u>」에 따른 <u>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u> 통해 ---.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
리자”라 한다)의 운항관리업
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생략)

제15조의16(운항관리자의 운용비
용) ①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
여야 할 비용은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신설>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6(운항관리자의 운용비
용)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
른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내항여
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임액의 1천분
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
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을 납부의무자에게 고
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6항에서 “체
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
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이
불명된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신 설>

다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채납자가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④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